

[붙임]

『사무용 전산기기(노트북) 구매』
입찰공고문

2026. 9.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7.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8.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9.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 적용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ICT인프라실, ☎051-663-8128

◇ 사업담당자(규격서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ICT인프라실, ☎051-663-8236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사무용 전산기기(노트북) 구매
물자구분	물품
세부품명	노트북컴퓨터(4321150301)
사업내용	규격서 참조
사업금액	95,626,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86,933,182원(부가가치세 제외)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
검사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분할납품	불가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장소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 본사(세부 장소는 수요부서 지정)
하자담보 책임기간	최종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기타사항	공동계약(공동이행) 불허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9/21 10:00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29 10:00
- ☐ 개찰일시 : 2026/09/29 11:00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pm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조건을 모두 충족]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계약법상 하자가 있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등은 입찰 참가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노트북컴퓨터(43211503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유효한 **창업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입찰참가 제출서류는 [별첨] 참고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 적격(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제출할 서류 : 대상자에 한해 개별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 보전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 보전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 ·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 ·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 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 · 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별첨_양식4, 참조)를 입찰 참가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별첨_양식5 참조)**를 입찰 참가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보증금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호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별첨_양식7)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을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 [별표3] (적격심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 86.245%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및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9조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최종낙찰자는 낙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 납품 및 청구는 규격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 물품의 배송누락, 지연, 오배송 등 불성실이행 및 시정요구 불이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은 반환 불가합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7. 입찰 무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별첨_양식8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0. 기타사항

-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서 및 규격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입찰 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본 공고와 관련된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 「계약규정」 및 관련 내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계약 예규에 따릅니다.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업체 간 담합,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의 금품 • 향응수수 등 청렴성을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제보센터(공사 홈페이지/클린신고센터/감사제보센터)



별첨

제출서류 목록과 양식

□ 입찰참가 제출서류 목록(각 1부)

구분	제출서류 목록	참고양식
①	입찰참가신청서	[양식1]
②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양식2]
③	조세포탈 등 관련 확인서	[양식3]
④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양식4]
⑤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양식5]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6]
⑦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양식7]
⑧	부정한 행위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확약서	[양식8]
⑨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⑩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⑪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날인)	
⑫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⑬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에 해당하는 보증서나 증권,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각서)	
⑭	입찰가격	
⑮	견적서	
⑯	제품보증서 및 A/S확약서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별첨_양식1]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입찰 개요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 일 자	2026. . .
	입찰건명	사무용 전산기기(노트북) 구매		
입찰 보증금	납부	☐ 보증금율 :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면제사유 : 지급확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공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제안 및 입찰 등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사항을 입찰공고한 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불입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불입서류 : 1. 인감증명서 1부.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일체 2026. . . 업 체 명 : (인)				
한국주택금융공사 귀중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사무용 전산기기(노트북)」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주택금융공사 귀중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사무용 전산기기(노트북)」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있어 상기인을 입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한국주택금융공사 귀중

-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 ※ 본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법인인감과 같아야 함
- ※ 입찰참가자 자체양식 사용가능
-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첨_양식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1.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공사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당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알선·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 등에 참가제한, 계약취소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도 감수하며,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아래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한편 위 서약과는 별도로 공사와 거래 시 불임 공급자 행동강령을 준수하겠으며 당사 뿐만 아니라 하도급 계약자들도 준수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귀하

공급자 행동강령

I. 윤리적 기준

- 1-1.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지 않을 것
-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행위를 하지 않으며 하도급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
- 1-3.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을 것
- 1-4.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을 교육할 것
- 1-5. 근로자의 고용시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정규직 사용비중 확대 등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II. 사회적 기준

- 2-1.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 2-2.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을 것
- 2-3.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하지 않으며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 않을 것.
- 2-4.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할 것

III. 환경적 기준

- 3-1.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 3-2.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
- 3-3.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할 것
- 3-4.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할 것

[별첨_양식3]

조세포탈 등 관련 확인서

당사는 「사무용 전산기기(노트북)」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처분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회사명 :

주소 :

대표이사 : (인)

한국주택금융공사장 귀하

[별첨_양식4]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 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별첨_양식5]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약속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약속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별첨_양식6]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이용동의(서명)

1. 본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무용 전산기기(노트북)” 입찰 공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 ① 입찰자, 낙찰자 및 계약자 본인 확인
- ② 입찰자격 확인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실제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나열)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납세현황,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2. 본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입찰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귀하

[별첨_양식7]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찰일시 : 2026년 월 일
- 입찰건명 : 사무용 전산기기(노트북)

본()은/는 귀사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으로 제안업체가 제안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약속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상 호 명 :

대 표 자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귀하

[별첨_양식8]

부정한 행위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약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약약합니다.

<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26.

서약자

(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귀하